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2. 1. 4.(화) 총 4매 (본문 4)	
담당 부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	담당자	·과장 주광돈, 주무관 성시현, 윤종하 ☎ (033) 769-5860, 5862, 5864	
보도일시	2022년 1월 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	

특정공법 심의제도 개선으로 공정·투명성 높인다

- 우수한 기술력 갖추면, 특정공법 건설공사 신규 진입장벽 낮아진다 -
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박일하)은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,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 -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인 공법에 비해 경제성,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지난 201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나,
 - 심의대상 후보공법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거나 시공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법 선정과정에서 부조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 이에 원주국토청은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과감히 특정공법 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.
- 특정공법 심의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《특정공법 심의제도 절차개선》

① 단계별 심의 도입을 통한 면밀하고 합리적인 평가 유도

- 그동안 특정공법 선정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통해 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계 통과 시 2단계* 심의를 시행해왔으나, 1단계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.

* 1단계 : 일반공법 대비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, 2단계 : 특정공법 선정

- 이에 원주청에서는 특정공법 적용 필요성과 공법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일자와 심의위원을 각각 달리함으로써 무분별한 특정공법 심의 지양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단계별 심의절차를 마련하였다.

② 후보공법 선정 투명화

- 지금까지 후보공법(6개) 선정 및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견적처리 업무를 설계용역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,
 - 담당 사업부서에서 책임지고 후보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고, 기술력이 높은 다양한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홈페이지나 SNS*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다.
- * 원주국토청 트위터(twitter.com/molitwonju), 페이스북(www.facebook.com/molit.wonju), 인스타그램(www.instagram.com/molitwonju-official)

③ 가격평가 기준 공정성 강화

- 후보공법에 대한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견적처리업무를 사업부서에서 주관하고, 청렴담당자 입회 후 개봉하여 가격평가를 담당하는 심의부서에 송부하도록 하였다.

④ 건설신기술 적극 반영

- 그간, 후보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다른 특허공법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나,
 - 특정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
 - 다만,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다수 존재하거나 시공성·경제성 등에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공법 심의 절차 진행하도록 하였다.

《투명하고 공정한 특정공법 선정》

① 심의자료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

- 심의대상인 각 후보공법에 대한 객관적 설명 및 상호 비교 검토 자료 부족 등 해당 심의자료 작성이 미흡하고,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공실적 및 시험성적서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비지적에 따라,
 - 공법별 장·단점을 상호 객관적으로 비교·분석 가능하도록 심의 자료를 작성하고,
 - 특정업체의 공법이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허위실적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된 시공실적 및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으며,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후보공법 선정에서 배제토록 하였다.

② 특정공법 심의 운용 철저

- 심의대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이 공법선정 후 상세설계나 기술사용협약 시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,
 - 후보업체로부터 ‘제출된 견적은 변경이 불가하고,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심의 조건’으로 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도록 함으로써, 가격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,
 - 사업부서는 선정된 특정공법의 심의당시 가격·수량 변동여부에 대하여 설계준공 및 발주과정*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·관리하고, 여건변동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.

* ①용역준공전 사전검토시→②준공검사시→③기술사용협약시→④발주설계서 방침시

- 또한, 설계단계에서의 특정공법 심의는 기존공법과의 종합적인 비교·분석을 진행하고, 중간단계 설계자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심의시기를 명확히 하였다.

- 주광돈 건설관리과장은 “이번 제도개선은 특혜시비, 행정불신 등 그동안 만성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”면서 “특정공법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우수한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·운영을 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성시현, 윤종하 주무관(☎ 033-769-5862, 58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